##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46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김용민·강유정·한준호

서영석 · 김동아 · 박지원

서미화・김 현・서영교

전현희 · 장경태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반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져 일부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 이상으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형벌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을 부 과하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음.

일부 청소년은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재사회화되지 않은 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소년법」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음.

실제로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비율은 최근 10년 동안 전체 소년 범

죄에서 꾸준히 11~15%에 이르고 있어 범죄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소년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진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소년 범죄의 경우 피해자 역시 대부분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년법」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제도가 부족하고, 통상의 형사절차보다도 피해자가 절 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소년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소년 피해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

이에 반사회성이 강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할 경우 20년 유기징역으로 처할 수 있도록하며, 가석방 기준도 종전에 비해 강화함.

또한 피해자가 소년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수준으로 강화하고, 피해자 등이 해당 심리절차에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심리기일 시일과 장소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제17조의3 신설, 제24조제2항, 제30조의3 신설, 제59조, 제65조제1호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제36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4세"를 "12세"로 한다.

1. 죄를 범한 소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 1항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제외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3(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가 소년인 경우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제24조제2항 단서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을 "직권 또는 피해자·법 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참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참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당사자의 참여권)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심리기일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심리기일의 시일과 장소는 제1항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제3호"로 한다.

제59조 중 "15년"을 "20년"으로 한다.

제65조제1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5년"을 "20년"으로, "3년"을 "7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년의 처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죄를 범한 소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
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고) ①
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	
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u>1</u> . 죄를 범한 소년	1. 죄를 범한 소년(「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제1항의 특정강력
	범죄를 범한 소년은 제외한
	<u>다)</u>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2
를 한 10세 이상 <u>14세</u> 미만	<u>12세</u>
인 소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17조의3(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가 소년인 경우 피해
	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피
	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
	<u>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u>
	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
	<u>다.</u>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제24조(심리의 방식) ① (생 략)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 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 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
  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
  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 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 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 진다.

제24조(심리의 방식) ① (현행과 같음)

2	 	 	 		 _		-
	 	 	 _ ス`	ココ	E	- 1	_

가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②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② (생 략)

-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 다.
-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 ④ 제1항제2호, 제3호-----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 피해자 · 법정대리인 ·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 계에 있는---.

- ③ 제2항에 따라 참석할 수 있 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 위, 참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 제30조의3(당사자의 참여권)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변호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 제자매는 심리기일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심리기일의 시일과 장소는 제1항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 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 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현행과 같음)

<삭 제>

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 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 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 2. <u>15년</u> 유기형의 경우에는 <u>3</u><u>년</u>
  - 3. (생략)

·.
⑤・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u> 20년</u>
제65조(가석방)
<u>.</u>
1 <u>10년</u>
2. <u>20년</u> <u>7</u>
<u>년</u>
3. (현행과 같음)